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양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7.

발 의 자 : 이양수 · 박준태 · 서범수
김소희 · 강대식 · 김미애
이달희 · 박정하 · 이현승
이종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(보훈병원을 포함)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, 인천,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.

이에 참전유공자에게 의료 지원을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).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(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”을 “제1항의 의료기관”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의료기관”이라 한다)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의료지원) ① 참전유공자가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</u> (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(약제비용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 <u><신 설></u>	제7조(의료지원) ① ----- -- <u>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1.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</u> 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 “보훈병원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]
	2.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</u> (이하 “공공의료기관”이라 한다)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의</u>	② ----- ----- <u>제1항의 의료기</u> <u>관</u> -----

<u>료기관</u>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 ③ (생 략)	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	--